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 11 선고 2020가단5286860 판결 [구상금 등 청구의 소]

전 문

원 고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진명
담당변호사 성승용

피 고 1. A
2. B
3. C
4. D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효성
담당변호사 김원용, 이경수, 권광우
변 론 종 결 2021. 11. 2.
판 결 선 고 2022. 1. 11.

주 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173,620,632원 및 그 중 41,243,493원에 대하여,
나. 피고 B는 피고 A와 연대하여 위 가.항 기재 돈 중 155,005,753원 및 그 중 22,628,614원에
대하여각 1995. 7. 31.부터 1998. 1. 31.까지 연 17%, 그 다음날부터 1998. 8. 31.까지 연 25%,

그 다음날부터 1998. 12. 31.까지 연 20%, 그 다음날부터 2005. 5. 31.까지 연 18%, 그 다음날부터 2012. 11. 30.까지 연 15%, 그 다음날부터 2016. 1. 31.까지 연 12%, 그 다음날부터 2019. 3. 31.까지 연 10%, 그 다음날부터 2020. 11. 20.까지 연 8%,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가. 피고 C과 피고 A,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8. 4. 4.경 체결된 명의신탁약정을 242,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나. 피고 C, D는 공동하여 원고에게 24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주문 제1항 및 선택적으로, 주문 제2항 또는 피고 D는 피고 A,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피고 A,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별지 피고 A, B에 대한 청구원인 기재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이에 의하면, 피고 A, B는 원고에게 주문 제1항 기재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C,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주택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갑 제1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E의 소유였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순차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등기목적	접수	등기원인	권리자
소유권이전	2003. 10. 1. 제108061호	2003. 9. 3. 매매	소유자 F
소유권이전	2018. 4. 11. 제43796호	2018. 4. 4. 증여	소유자 C
소유권이전	2019. 10. 15. 제108941호	2019. 10. 15. 매매	소유자 D

나. 사해행위

1)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매수한 부동산에 관하여 자신의 공동담보재산으로 편입시키지 않고, 명의수탁자와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에 기하여 그 등기명의를 명의수탁자 명의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면, 명의신탁약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명의신탁자의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가 된다고 할 것이고, 채무자인 명의신탁자는 명의수탁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당시 채권자를 해할 사해의사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며, 나아가 수익자인 명의수탁자에 대하여도 위 사해행위에 대한 악의가 있다고 추정된다(대법원 2004. 3. 25. 선고 2002다69358 판결 등 참조).

2) 갑 제4, 5호증, 을 제1, 5, 6호증의 각 기재, 주식회사 G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 A, B는 2003. 9. 3.경 E으로부터 이 사건 주택을 매수하면서 F와 사이에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여 2003. 10. 1. F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이후 피고 A, B는 2018. 4. 4.경 F와 사이에 증여의 형식으로 이 사건 주택의 소유권을 이전받기로 약정하고, 딸인 피고 C와 사이에 명의신탁약정(이하 ‘이 사건 명의신탁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여 2018. 4. 11. 피고 C 명의로 위 증여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을 추인할 수 있다.

① 피고 C, D는 F이 2003. 9. 3. E으로부터 이 사건 주택을 50,000,000원에 매수하여, 그 매매대금 중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H(2001. 11. 1. 주식회사 G과 합병)인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 24,850,000원과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I인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 11,000,000원을 공제한 14,150,000원[= 50,000,000원 - (24,850,000원 + 11,000,000원)]을 현금으로 E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데, 그와 같이 상당한 금액의 돈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함은 매우 이례적이고,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자료도 없다.

② F은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2003. 10. 1. 당시는 물론이고, 그 이후에도 현재까지 계속하여 광양시(행정구역 변경 전 광양군)에 거주하여 왔을 뿐, 이 사건 주택에 거주한 적이 전혀 없고,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제3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적도 없다.

③ 반면 F은 피고 A의 동서인데, 피고 A와 그 처인 피고 B는 2003. 10. 20. 이 사건 주택으로 전입을 신고한 이래 현재까지 18년 넘게 계속하여 이 사건 주택에 거주하여 왔다. 그 과정에서 이 사건 주택의 소유자로 등기된 F이나 피고 C, D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으며, 그들에게 차임을 지급한 적도 없다.

④ 2012. 4. 12. F의 계좌에서 24,973,991원이 출금되어,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마쳐져 있던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H인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 24,850,000원의 변제에 사용되기는 하였으나, 피고 C은 2003. 11.경부터 2012. 4. 12.경까지 10년 가까이 매월 F에게 돈을 송금함으로써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의 이자를 부담하였다.

⑤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2018. 4. 4. 증여를 원인으로 2018. 4. 11.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피고 C은 피고 A, B의 딸이다. 피고 C, D는 F이 다수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어 그와 관련한 세금을 줄이고자 2018. 4. 4. 처조카인 피고 C에게 이 사건 주택을 증여하였다고 주장하나, 당시 이 사건 주택의 시세가 215,000,000원에 달하고,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마쳐진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I인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는 11,000,000원에 불과한바, F이 위 주장과 같은 이유로 처조카에게 실질적 가치가 200,000,000원을 넘는 이 사건 주택을 무상으로 증여하였다 함은 쉽사리 이해하기 어렵다.

⑥ 피고 C은 2003. 10. 20. 부모인 피고 A, B와 함께 이 사건 주택에 전입을 신고하여 그 무렵부터 함께 거주하기는 하였으나, 2005. 10. 7. 다른 곳으로 이사하였고, 이후 2018. 4. 11.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이 사건 주택에 거주한 적이 없다.

3) 안양시 만안구청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2018. 4. 4.경 이 사건 명의신탁약정 당시 피고 A, B는 별다른 적극재산이 없어, 채무초과 상태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4) 피고 A, B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F와 사이에 증여의 형식으로 소유권을 이전받기로 약정한 이 사건 주택을 공동담보재산으로 편입시키지 아니하고, 피고 C와 사이에 이 사건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여 피고 C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므로, 이 사건 명의신탁약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를 비롯한 피고 A, B의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피고 C은 사해행위인 이 사건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이어 피고 D는 피고 C과 사이의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바, 사해행위의 수익자인 피고 C과 전득자인 피고 D의 악의는 추정된다.

다. 사해행위의 일부취소 및 가액배상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등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사해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에 그 사해행위는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 내에서만 성립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사해행위 후 변제 등에 의하여 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경우, 사해행위를 취소하여 그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는 것은 당초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지 아니하던 부분까지 회복을 명하는 것이 되어 공평에 반하는 결과가 되므로,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 가액의 배상을 구할 수 있을 뿐이고, 그와 같은 가액산정은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12. 27. 선고 2001다33734 판결).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이 사건 명의신탁약정 전인 2002. 10. 8. 마쳐져 있던 앞서 본 주식회사 I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이 사건 명의신탁약정 이후인 2018. 4. 26. 말소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갑 제4,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2021년 이 사건 주택의 시세가 253,000,000원인 사실, 이 사건 명의신탁 약정 당시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가 11,000,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변론종결일 이 사건 주택의 가액도 위 시세와 동일한 사실을 추인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 사건 명의신탁약정은 242,000,000원(= 253,000,000원 - 11,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사해행위가 되고, 원고의 피고 A, B에 대한 피보전채권액은 위 242,000,000원을 초과하므로, 이 사건 명의신탁약정은 242,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수익자인 피고 C와 전득자인 피고 D는 공동하여 원고에게 24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선택적 청구인 사해행위 취소 및 가액배상 청구를 인용하므로, 다른 선택적 청구인 채권자 대위권에 기초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에 대하여는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라. 피고 C, D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 C, D는 피고 A, B가 2003. 9. 3.경 E으로부터 이 사건 주택을 매수하면서 F과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여 F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는 사해행위를 하였다면, 이후 그들이 피고 C과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여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피고 C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은 별도의 사해행위를 구성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 A, B가 F과 사이에 2003. 9. 3.경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할 당시 채무초과 상태였다면, 위 명의신탁약정이 사해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이후 2018. 4. 4.경 채무초과 상태에 있던 피고 A, B는 F과 사이에 증여의 형식으로 이 사건 주택의 소유권을 이전받기로 약정하였는바, 그러한 상황에서 피고 A, B가 이 사건 주택을 그들의 공동담보 재산으로 편입시키지 아니하고, 피고 C과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여 피고 C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은 앞서 F과 체결한 명의신탁약정과는 구별되는 별도의 사해행위를 구성한다고 보아야 한다.

피고 C, D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진재경

목 록

1동의 건물의 표시 :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J에 있는 K건물
[도로명주소]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L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건물의 번호 : M

구 조 : 철근콘크리트조

면 적 : 73.48㎡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토지의 표시 : 1.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J 대 642.7㎡

대지권의 종류 : 1 소유권대지권

대지권의 비율 : 1. 642.7분의 40.443

끝.

피고 A, B에 대한 청구원인

1. 신용보증

원고는 피고 A의 보증의뢰에 따라, 피고 B의 연대보증하에, 피고 A가 운영하던 소외 N공업사의 기업경영에 필요한 자금을 피고 A가 소외 기업은행(이하 “소외 은행” 이라고 합니다)으로부터 대출받고 부담하게 될 채무에 대하여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라 아래표와 같이 각 신용보증약정을 하고, 신용보증서를 발행하였습니다.

아 래

구분 순번	보증일자	보증금액	보증기한	대출과목	대출일자	대출금액	연대보증인
1차보증	1992. 9. 22.	53,700,000	1998. 6. 25.	기타시설자금대출	1992. 9. 22.	53,700,000	B
2차보증	1993. 6. 19.	30,000,000	1996. 3. 25.	금융채권자금대출	1993. 6. 19.	30,000,000	B
3차보증	1993. 9. 15.	20,000,000	1994. 8. 25.	금융채권자금대출	1993. 9. 15.	20,000,000	-

2. 주채무의 내용

소외 은행은 위 각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각 대출일자에 피고 A와의 사이에 각 체결된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에 기한 여신거래약정에 따라 각 대출과목으로 각 대출금액을 변제기한을 각 보증기한으로 정하여 피고 A에게 대출하였다가 이후 보증기한의 변경으로 최종 변제기한을 변경보증기한으로 변경하였습니다.

3. 구상채권의 발생 및 범위

가. 대위변제금

피고 A는 1994. 9. 12. 당좌부도로 인해 최종 부실처리되어 위 각 보증 관련 대출금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는바, 소외 은행이 원고에게 보증채무의 이행을 요구하여, 원고는 소외 은행에 대하여 1995. 7. 31. 위 각 보증으로 인한 연체 대출원리금 106,071,217원[1차보증 대위변제금 57,239,786원 + 2차보증 대위변제금 30,216,552원 + 3차보증 대위변제금 18,614,879원]을 원고가 대위변제하여 보증채무를 이행하였습니다.

나. 대위변제금의 일부회수

원고는 1995. 7. 31. 위와 같이 소외 은행에 대하여 이행한 대위변제금 중, 1차보증 관련 1995. 8. 18.부터 같은 해 12. 16.까지 합계 금 12,520,548원을, 2010. 1. 26. 금 44,719,238원을 각 회수하여 1차보증 대위변제금의 변제에 충당하였으므로 1차보증 대위변제금 잔액은 금 0원이고, 2차보증 관련 2010. 1. 26. 금 7,071,122원을, 2011. 5. 18. 금 516,816원을 각 회수하여 2차보증 대위변제금의 일부 변제에 충당하였으므로 2차보증 대위변제금 잔액은 금 22,628,614원입니다.

다. 채권보전비용

신용보증약정 당시 피고 A, B는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취득한 권리의 보전·이행·행사에 소요된 비용을 상환하기로 약정하였는바, 원고는 위 각 보증 관련 구상채권보전을 위해 피고 A, B의 재산에 대한 채권보전비용으로 금원을 지출하였다가 일부 회수하여 현재 금 1,220,765원의 잔액이 존재합니다.

라. 지연손해금

- (1) 신용보증약정 당시 피고 A, B는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이행일 이후 그 이행한 금액에 대하여 신용보증기금법 제35조 소정의 연율 2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손해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원고가 정한 이율은 위 이행일인 1995. 7. 31.부터 1998. 8. 31.까지는 연 25%, 그 다음날부터 1998. 12. 31.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2005. 5. 31.까지는 연 18%, 그 다음날부터 2012. 11. 30.까지는 연 15%, 그 다음날부터 2016. 1. 31.까지는 연 12%, 그 다음날부터 2019. 3. 31.까지는 연 10%, 그 다음날부터 현재까지는 연 8%입니다.

(2) 확정손해금

위 나.항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피고 A, B로부터 위 각 보증과 관련하여 각 금원을 회수하여 위 대위변제금의 일부변제에 충당하였으므로, 위 각 회수금원에 대한 대위변제일인 1995. 7. 31.부터 각 회수일까지 기간의 확정손해금을 위 (1)항의 이율에 따라 산정하면 아래표와 같이, 1차보증 관련 확정손해금 합계는 금 112,136,989원이고, 2차보증 관련 확정손해금 합계는 금 19,019,385원입니다.

아 래

구분	회수일	회수금액	지연손해 금률	확정손해금계산내역	확정손해금
1차 보증	1995. 8. 18.	333,972	연 17%	$333,972 \times 17/100 \times 19/365$ (1995. 7. 31.부터 1995. 8. 18.까지 19일간)	2,955
	1995. 9. 27.	3,908,000	연 17%	$3,908,000 \times 17/100 \times 59/365$ (1995. 7. 31.부터 1995. 9. 27.까지 59일간)	107,389

구분	회수일	회수금액	지연손해 금률	확정손해금계산내역	확정손해금
	1995. 12. 15.	5,000,000	연 17%	$5,000,000 \times 17/100 \times 138/365$ (1995. 7. 31.부터 1995. 12. 15.까지 138일간)	321,369
	1995. 12. 16.	3,278,576	연 17%	$3,278,576 \times 17/100 \times 139/365$ (1995. 7. 31.부터 1995. 12. 16.까지 139일간)	212,254
	2010. 1. 26.	44,719,238	연 17%	$44,719,238 \times 17/100 \times 916/365$ (1995. 7. 31.부터 1998. 1. 31.까지 916일간)	19,078,574
			연 25%	$44,719,238 \times 25/100 \times 212/365$ (1998. 2. 1.부터 1998. 8. 31.까지 212일간)	6,493,478
			연 20%	$44,719,238 \times 20/100 \times 122/365$ (1998. 9. 1.부터 1998. 12. 31.까지 122일간)	2,989,450
			연 18%	$44,719,238 \times 18/100 \times 2343/365$ (1999. 1. 1.부터 2005. 5. 31.까지 2343일간)	51,670,935
			연 15%	$44,719,238 \times 15/100 \times 1701/365$ (2005. 6. 1.부터 2010. 1. 26.까지 1701일간)	31,260,585
	소계	-	-	-	112,136,989
2차 보증	2010. 1. 26.	7,071,122	연 17%	$7,071,122 \times 17/100 \times 916/365$ (1995. 7. 31.부터 1998. 1. 31.까지 916일간)	3,016,753
			연 25%	$7,071,122 \times 25/100 \times 212/365$ (1998. 2. 1.부터 1998. 8. 31.까지 212일간)	1,026,765
			연 20%	$7,071,122 \times 20/100 \times 122/365$ (1998. 9. 1.부터 1998. 12. 31.까지 122일간)	472,699
			연 18%	$7,071,122 \times 18/100 \times 2343/365$ (1999. 1. 1.부터 2005. 5. 31.까지 2343일간)	8,170,342
			연 15%	$7,071,122 \times 15/100 \times 1701/365$ (2005. 6. 1.부터 2010. 1. 26.까지 1701일간)	4,943,004
	2011. 5. 18.	516,816	연 17%	$516,816 \times 17/100 \times 916/365$ (1995. 7. 31.부터 1998. 1. 31.까지 916일간)	220,489
			연 25%	$516,816 \times 25/100 \times 212/365$ (1998. 2. 1.부터 1998. 8. 31.까지 212일간)	75,044
			연 20%	$516,816 \times 20/100 \times 122/365$ (1998. 9. 1.부터 1998. 12. 31.까지 122일간)	34,548
			연 18%	$516,816 \times 18/100 \times 2343/365$ (1999. 1. 1.부터 2005. 5. 31.까지 2343일간)	597,156
			연 15%	$516,816 \times 15/100 \times 2178/365$ (2005. 6. 1.부터 2011. 5. 18.까지 2178일간)	462,585
	소계	-	-	-	19,019,385

4. 원고는 위와 관련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단384159호로 구상금 청구 소를 제기하여 2010. 11. 18.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213,143,608원 및 그 중 41,760,309원에 대하여, 나. 피고 B는 피고 A와 연대하여 위 가.항 기재 금원 중 194,528,729원 및 그 중 23,145,430원에 대하여 각 1995. 7. 31.부터 1998. 1. 31.까지는 연 17%, 그 다음날부터 1998. 8. 31.까지는 연 25%, 그 다음날부터 1998. 12. 31.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2000. 8. 5.까지는 연 18%,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원고승소판결을 받았으며, 그 무렵 위 판결은 확정되었습니다.

5. 원고는 위 판결의 확정 후 10년간의 소멸시효가 임박하여 피고 A, B에게 수차례에 걸쳐 구상금채무 이행을 촉구하였으나, 차일피일 기일만 미루면서 시효기일을 넘기려고 회색하고 있어 시효를 중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6. 결 론

(1) 그렇다면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위 2차보증 대위변제금 잔액 금 22,628,614원, 1차보증 관련 확정손해금 112,136,989원, 2차보증 관련 확정손해금 19,019,385원, 3차보증 대위변제금 18,614,879원, 채권보전비용 금 1,220,765원의 합계 금 173,620,632원 및 그 중 위 2차 내지 3차 보증 대위변제금 합계 금 41,243,493원에 대하여,

나. 피고 B는 피고 A와 연대하여 위 가.항 기재 금원 중, 2차보증 대위변제금 잔액 금 22,628,614원, 1차보증 관련 확정손해금 112,136,989원, 2차보증 관련 확정손해금 19,019,385원, 채권보전비용 금 1,220,765원의 합계 금 155,005,753원 및 그 중 위 2차보증 대위변제금 잔액 금 22,628,614원에 대하여,

각 대위변제일인 1995. 7. 31.부터 1998. 1. 31.까지는 원고 소정의 연 17%의, 그 다음날부터 1998. 8. 31.까지는 변경된 원고 소정의 연 25%의, 그 다음날부터 1998. 12. 31.까지는 변경된 원고 소정의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2005. 5. 31.까지는 변경된 원고 소정의 연 18%의, 그 다음날부터 2012. 11. 30.까지는 변경된 원고 소정의 연 15%의, 그 다음날부터 2016. 1. 31.까지는 변경된 원고 소정의 연 12%의, 그 다음날부터 2019. 3. 31.까지는 변경된 원고 소정의 연 10%의, 그 다음날부터 이 사건 소장 최종 송달일까지는 변경된 원고 소정의 연 8%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연손해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7. 관할합의

원고와 피고 A, B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의하였습니다.

끝.

